

『2024년 대구글로벌게임센터』 게임콘텐츠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재공고(자격인화)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글로벌 게임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2024년 대구글로벌게임센터 게임콘텐츠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의 참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2024. 11.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1. 목 적

- 가. 지역 게임기업의 성공적 글로벌 시장 진출 및 매출 증대 도모
- 나. 마케팅 지원을 통한 지역 게임콘텐츠의 판로 개척 및 시장 경쟁력 제고

2. 개 요

- 가. 사 업 명: 2024년 대구글로벌게임센터 게임콘텐츠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
- 나.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 2024. 11. 29.(금) 12:00까지 ※ 제출기한 엄수
- 다.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 라. 지원형태: 직접지원
- 마. 지원규모: 2개사 내외(기업 당 최대 20백만원)
※ 1차 모집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규모 변동가능
- 바.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퍼포먼스 마케팅	- SNS를 활용한 키워드, 배너 광고 - UA 마케팅 - 플랫폼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	- 유명 크리에이터 등 인플루언서 활용 게임 홍보
홍보영상 제작	- 게임콘텐츠 홍보영상 제작
홍보물 제작	- 리플릿, 브로슈어 등 게임콘텐츠 홍보물 제작

3. 지원대상 및 자격

가. 지원자격

구 분	내 용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기업 - 게임 제작/배급업 등록증 보유 기업

나. 지원대상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공고일 마감일(2024. 11. 29.) 기준 글로벌 마켓 상용화(런칭) 완료되었거나 상용화(런칭) 직전인 게임콘텐츠 - 2024. 11. 30.까지 글로벌 마켓에 상용화(런칭)이 가능한 게임콘텐츠 ※ PC, 콘솔 게임의 경우 마켓에서 상품 판매, 인게임 결제 가능한 상태 ※ 모바일 게임의 경우 마켓에서 결제모듈을 포함하여 다운 가능한 상태

다. 지원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1. 당해 연도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대구글로벌게임센터(타 글로벌게임센터 포함) 콘텐츠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사업이 2개를 초과하는 경우(50백만원 이하 사업은 사업 수 제외, 연구개발사업 제외)
2. 대구글로벌게임센터에서 최근 3년 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한 동일 게임의 경우 지원 제외(게임이 다를 경우 가능) ※ 마케팅 지원사업의 경우 '22년 글로벌 확산 지원, '23년 글로벌 마케팅 지원, '24년 글로벌 확산 지원 해당
3.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 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 등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5. 신청 기업 및 대표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6. 최근 3개년 간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타 글로벌게임센터를 포함한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연구 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 신청금액의 합계액이 25억을 초과하는 경우
7.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거나, 보조금 수금의 제한을 받은 경우
8.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사업대행기관 등)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9.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10. 사업자,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등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11. 과거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하여 지적받은 이력이 있거나, 정보공시 불이행 등 법적 의무 불이행 이력이 있는 경우
12. [붙임3] 신청/참여제한 대상 여부확인서의 '아니다'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13. 신청 기업 및 대표가 사법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등 법적분쟁 중인 경우

4. 지원 세부내용

가. 지원내용 및 성과물

구분	내용
퍼포먼스 마케팅	- SNS를 활용한 키워드/배너 광고, UA 마케팅, 플랫폼 마케팅 등 [성과물] 결과/정산보고서, 증빙(마케팅보고서, 집행내역, 캡처본 등), 집행서류(계약서 등)
인플루언서 마케팅	- 유명 크리에이터 등 인플루언서 활용 게임 홍보 [성과물] 결과/정산보고서, 증빙(제작 영상, 방송/방영 녹화본, 캡처본 등), 집행서류(계약서 등)
홍보영상 제작	- 게임콘텐츠 홍보영상 제작 [성과물] 결과/정산보고서, 증빙(제작 영상, 홍보영상 활용 증빙, 캡처본 등), 집행서류(계약서 등)
홍보물 제작	- 리플릿, 브로슈어 등 게임콘텐츠 홍보물 제작 [성과물] 결과/정산보고서, 증빙(제작 홍보물, 홍보물 활용 증빙 등), 집행서류(계약서 등)

※ 상기 내용은 변동 가능하며, 결과평가 시 추가로 요구되는 성과물 및 증빙서류는 제출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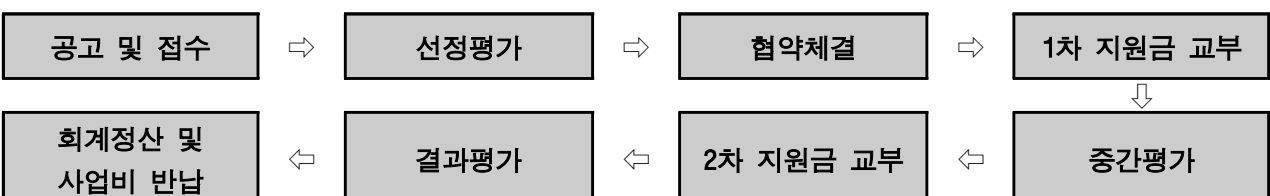
※ 마케팅 목표 시장이 국내만 해당될 경우 지원불가

※ 단순 기업 홍보, 재판매 가능한 홍보(굿즈, 기념품 등), 마케팅 내역 증빙이 불가능한 내용의 경우 지원불가

나. 지원조건 및 세부사항

구분	내용							
사업완료 조건	- 결과평가 전까지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사업 목표 달성 필수 - 결과평가 전까지 결과/정산보고서, 성과증빙, 집행서류 제출 필수 ※ 최종 목표 미달성, 결과평가 실패판정, 결과물 미제출 등의 경우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결과평가: 2024. 12. 24.(화), 예정							
지원금 지급	- 협약체결 후 1차(70%), 중간평가 결과 '계속' 판정 시 2차(30%) 지급 - 지원금 교부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제출시기</th> <th>보험금액</th> <th>보험기간</th> </tr> </thead> <tbody> <tr> <td>이행보증보험증권</td> <td>1차 교부 신청 시</td> <td>지원금100% + 이자</td> <td>협약기간 + 60일 가산</td> </tr> </tbody> </table> <p>※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시기에 미제출 시 지원 취소 및 협약 해지 등 후속 처리</p>	구분	제출시기	보험금액	보험기간	이행보증보험증권	1차 교부 신청 시	지원금100% + 이자
구분	제출시기	보험금액	보험기간					
이행보증보험증권	1차 교부 신청 시	지원금100% + 이자	협약기간 + 60일 가산					
사업비 관 리	- 부가가치세(VAT)는 보조금으로 집행 불가 - 미집행 보조금 및 이자는 사용 지침에 따라 전액 반납 - 보조금 집행서류 및 마케팅 증빙 필수(증빙 미제출 시 불인정처리 및 환수)							

다. 사업수행 절차



5.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가. 선정절차

단계	선정방법	주요내용	비고
1단계	신청·서류접수	사업신청서 이메일 접수	-
2단계	서류검토	서류적합성 검토 심사 진행	DIP
4단계	서면 또는 발표평가	선정기준에 의한 항목별 평가	외부평가위원 5인 내외
5단계	협약체결	규정에 의거 협약 체결	-

※ 신청기업이 모집규모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 가능

나. 선정방법

- 1) 평가위원: 지역 내·외 산/학/연/관 전문가 구성
- 2) 평가기준: 평가위원 산술평균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다. 평가항목

- 1) 서류적합성 검토: 자격요건 적격여부, 필수서류 제출, 원본 날인 등 서류검토
- 2) 서면 또는 발표평가 ※ 2024. 12. 5.(목), 예정(변동가능)

구분	평가내용	배점
지원 필요성	-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마케팅 지원 필요성 및 기대성과 등	10
게임 우수성	- 게임콘텐츠의 우수성 및 완성도, 재미요소 등	20
게임 시장성	- 게임콘텐츠의 차별성 및 시장 경쟁력 등	30
해외진출전략	- 해외 마켓에 대한 마케팅 방안의 구체성 및 성공가능성 등	30
사업수행역량	- 해외 마켓 출시 역량, 참여인력 및 예산 적정성 등	10
합 계		100

※ 상기 내용은 예시로 평가항목 및 배점 등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평가 시 예산심의를 통해 사업비 편성 적정성 확인 후 최종 예산 확정 예정

라. 지원기업 선정

- 1) 평가 절차 및 항목, 기준, 일정 등 세부내용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 신청기업이 모집규모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할 수 있음
- 3) 평가결과 적합기업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재공고 또는 추가공고 가능함
- 4) 추진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기업 수) 및 내용 등 세부사항이 조정 될 수 있음
- 5) 필요한 경우 종합심의를 실시하며, 종합심의 시 선정과제의 최종 합격, 사업비 조정, 사업 내용 변경 관련 협의를 추가 진행할 수 있음
- 5)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의 사업 중 지원예산 또는 지원규모 제한으로 선정에서 제외된 기업은 후보 기업으로 관리할 수 있음
- 6) 협약체결의 취소 또는 사업 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 점수 고득점 순에 따라 후순위 기업 선정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음
- 7) 서류적합서 검토의 경우 1개 항목 이상 Fail일 경우 불합격 판정함
- 8) 선정 및 협약 후 지원제외 대상 사유 등 결격 사유 발생 시 협약체결 취소 가능함

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접수 및 문의처

- 1)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 2024. 11. 29.(금) 12:00까지** ※ 접수기간 준수, 초과 시 접수 불가
- 2) 접수방법: **게임센터 대표 이메일 제출(dggc@dip.or.kr)**
- 3) 문의처: 콘텐츠진흥본부 게임웹툰센터(T. 053-215-4920 / E. dip73@dip.or.kr)

나. 제출서류

제출서류	부 수	제출방식
① 사업계획서(날인O) PDF 1부, (날인X) HWP 1부	각 1부	- 제출 서류는 날인 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날인 필수) - ①번 사업계획서의 경우 한글파일(날인X)도 함께 제출 -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필수
②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③ 신청/참여제한대상 여부확인서		
④ 약약서		
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⑥ (22년/23년) 2개년 기업 재무제표 ※ 23년 재무제표는 상황에 따라 가결산재무제표 제출 가능하나 회계기관(사)의 인증 필수		
⑦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⑧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		
⑩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⑪ 사용인감계(사용인감계 사용 시)		
⑫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⑬ 게임제작/배급업등록증		
⑭ 게임플레이 동영상, 다운가능 마켓 링크 제출 (게임시연을 통해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⑮ 게임 출시 성과 증빙(출시된 경우) (매출액, 다운로드 수, 계약, 차트인 등 관련 증빙)		
⑯ 게임 인증 및 판매 관련 증빙(해당 시) (판매계약서, GS인증, 국내외 규격인증, 특허 등록, 특허 출원, 기타 인증 등)		
⑰ 사업계획서 상 책정된 위탁/용역 견적서 제출		
⑱ PT 발표자료(PDF로 제출) * 5분 발표 분량		

※ 추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요청(협약 시 수정사업계획서, 국세/지방세 납부확인서, 인감증명서 등)

다. 접수안내

- 각 서류는 PDF로 제출하며, 전체 파일은 1개의 압축파일(zip)로 제출
- 각 서류의 파일명은 상단 제출서류 리스트의 번호 및 이름과 동일하게 제출
- 압축파일명은 **[글로벌마케팅지원] 기업명**으로 제출
- 각 서류의 파일명은 상단 제출서류 리스트 번호 및 이름과 동일하게 제출하며, 압축 파일은 **[지원사업명] 기업명**으로 제출(하단 예시와 동일하게 제출)

7.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작성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검증지침」, 「보조사업자정보공시세부기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회지침」에 의거하며, 신청기업 및 수행기업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위 법령,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의 규정을 적용함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 전부 신청기업, 수행기업의 책임으로 봄 ※ 공고에 미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규정, 지침에 따름
- 평가 절차 및 기준, 일정 등 사업 세부내용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수행기업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타 기관으로 과제 중복지원이 발견될 경우 과제 탈락 및 협약 해지 될 수 있음
- 협약 이후에라도 지원제외 대상 사유 등 결격 사유 발생 시 협약체결 취소, 환수 등 제재조치 가능함
-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는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 서류는 인감을 필수 날인해야하며, 날인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
- 제출방법 또는 서류 누락, 오기재 등 별도 안내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수행기업의 책임임
-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 해지, 지원금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제재사유 발생 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공개될 수 있음
- 수행기업은 과제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과제 개발을 완료하고 최종 결과물을 제출해야하며, 종료일까지 실적보고 및 정산을 완료해야 함
- 과제 결과물에 대해 한국콘텐츠진흥원, 대구시,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등 관련 기관에서 홍보·마케팅 등 공공의 목적으로 무상 활용될 수 있음
-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자로 부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제재 조치 가능함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지원이력 정보 등의 수집·조회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를 제출하여야 함
- 과제수행기관은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계좌)으로 구분·관리하여야 하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행기업은 지원과제와 관련한 자금 집행 및 기업 매출현황 등에 대해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야 함
-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수행기업은 문체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2018.03.)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를 결과평가 전까지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 남녀고용평등법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9조에 근거,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부과 및 미실시 시 과태료가 부과됨
 - ※ 문체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2018.03.): 공모사업 등 지원 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및 성범죄 예방 노력을 담은 서약서 제출 의무(수행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과제 참여인력 모두 이수 확인서 제출 필수)
- 수행기업은 관리기관의 요청 시 진도상황 및 목표 달성 현황을 필수 보고하여야 함
- 수행기업은 관리기관의 요청 시 관련 교육 등 행사에 필수 참석해야함
- 관리기관은 사업종료 이후 5년간 수행기업에 대한 실적 성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행기업은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수정공고를 추진함